

#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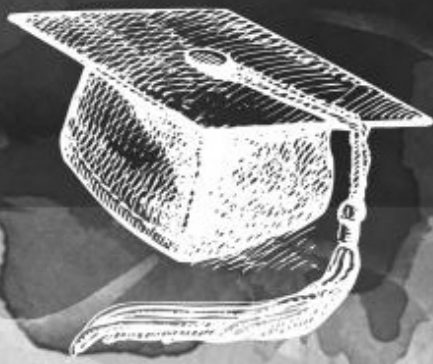
# 목 차

## I. 총 칙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수립 근거 ..... 1
2.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원칙 ..... 3
3.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준수 ..... 6
4.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 정보의 제공 ..... 8
5. 대학입학 표준 공통원서 사용 및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 9

## II. 전형별 기본사항

1. 일반전형의 기본사항 ..... 10
  - 가. 전형 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10
  - 나.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 10
  - 다. 사정 모형 ..... 10
2. 특별전형의 기본사항 ..... 11
  - 가. 전형 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11
  - 나. 특별전型的 종류 ..... 11
  - 다.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11
3. 특별전型的 세부사항 ..... 13
  - 가. 특별전형 분류 ..... 13
  - 나. 정원 내 특별전형 ..... 13
  - 다. 정원 외 특별전형 ..... 17



### III. 전형요소

1. 학교생활기록부 .....	29
2. 대학수학능력시험 .....	30
3. 대학별 고사 .....	32

### IV.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1. 대학별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	33
2. 2019학년도 주요 전형별 대학입학 전형일정 .....	34
가. 수시모집 입학전형 .....	34
나. 정시모집 입학전형 .....	35
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36
라. 추가모집 입학전형 .....	37
마. 전형별 등록현황 제출 .....	37
바. 대학입학전형 지원 방법 위반자 처리 .....	38
3.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세부사항 .....	39
가. 모집시기 구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	39
나. 대학지원 방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	39
다. 복수지원 관련 사항 .....	41
라. 합격자 발표 .....	42
마. 등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	44
바. 미등록 충원 .....	45
사. 등록금 환불 .....	46
아. 전형료 .....	46
자. 선행학습 영향평가 .....	46
차. 대학별 모집요강 공통 기재 사항 .....	47

[별첨 1] 2018학년도 대비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 일정 ..... 50

[별첨 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현황(2016. 8월 기준) ..... 51



# I. 총 칙

## 1.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수립 근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라 한다)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고, 대교협 정관 제5장의3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통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함

###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전형 계획의 공표)

- 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5 제1항에 따라 대학 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4조의5 제4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③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 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 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④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 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2.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원칙

### 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추진

-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른 대학별 고사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입 전형요소는 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와 사교육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며, 교과 외 활동은 고교 교육과정에 따라 시행되었거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참가한 활동을 중심으로 반영함
  - 학생부 위주 전형 중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전형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전형 자료들(학생부의 교과 성적,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 상황,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반영하되, 각종 인증 시험 점수, 경시대회 등 교외 수상 실적은 평가요소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기여 입학제, 고교 등급제 및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 나. 대학입학전형의 간소화 추진

- 수험생들이 알기 쉽게 대입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핵심 전형요소 위주로 표준화한 대입전형 체계 내에서 대입전형 간소화를 추진함
  - 모집시기(수시·정시)별 취지에 맞게 전형을 운영함

[ 표준 대입전형 체계 ]

구분	전형유형	주요 전형요소
수시	학생부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부 교과) 교과 중심</li> <li>• (학생부 종합)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 활용 가능]</li> </ul>
	논술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술 등</li> </ul>
	실기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li> </ul>
정시	수능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능 등</li> </ul>
	실기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li> </ul>

\* 학생부 위주 전형유형은 학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하는 전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 교과 전형 :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모집단위 특성에 맞도록 학생부 반영 권장)  
 • 종합 전형 :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

\*\* 실기 위주 전형유형에는 '특기자 전형'이 포함되나,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모집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장하며, 외부 실적보다 학생부 중심의 평가를 권장

- 수시모집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완화할 것을 권고함
  -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등급으로 설정
- 전형방법 수 제한을 통해 전형 간소화를 추진함
  - 대학별로 사용하는 전형방법 수를 최대 6개 이내로 제한함(정원 내 전형 기준)
    - 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전형방법의 수 축소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전형방법'으로 계산
    - 예체능계열의 경우, 최대 전형방법 수 기준(6개) 계산에서 제외하고, 사범계열 및 의학교열의 인·적성 평가, 종교계열의 교리 문답 등은 전형방법 수 산정 시 고려되는 전형요소에서 제외
    - '성인학습자전형'의 경우, 최대 전형방법 수 기준(6개) 계산에서 제외
      - ※ 성인학습자전형 모집대상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에 해당하는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
  - 일부 수험생의 합격을 미리 발표하여 수험생 간 혼선을 유발하는 우선선발 및 우선 합격자 발표를 금지함
  - 전형요소의 반영비율 등은 평가에서 실제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하여야 함
- 학생·학부모들이 대입전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며, 학생·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 다.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

-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정원 외 전형의 경우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을 선발하여야 함
  -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대학은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자의 친인척이 해당 입학 전형에 지원한 경우, 회피 또는 제척 제도를 운영해야 함

- 전형관계서류(DB 서류포함 등)는 최소 4년 동안 보관하여 대학입학 전형관리의 공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만,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관련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

-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법령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11조~12조 및 제60조 등)
  - ※ 대입전형 학생의 개인 정보가 보유 기간 만료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5일 이내) 관련 개인 정보를 파기해야 함. 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개인 정보의 파기 방법, 파기 절차 등은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VI-4 개인 정보 파기」 참고

- 예체능 실기고사 관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예체능 실기고사의 연합 관리 권장
  - 예체능 실기고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공별(체육, 음악, 미술, 무용 등)로 몇 개 대학이 연합하여 운영하도록 권장
- 평가위원 구성 원칙
  - 평가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평가위원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

## 라. 기타

- 외국의 고등학교 학력 인정 졸업시험 및 대학입학전형 자료는 해당 국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예정)한 자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및 '국제화 관련 전형'에 한하여 전형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음(예 : SAT, 미국 고교 이수 성적 GPA 등)
- 「고등교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의 이수 여부 및 결과는 대학 입학 후 학점 인정 자료로만 활용하고, 입학전형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

### 3.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준수

#### 가.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준수

- 대학은 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수립·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기준으로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대학의 학생 선발 방식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li> <li>•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장,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고, 개별 대학의 전형 계획에 대한 협의·조정을 실시함</li> <li>•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교협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함</li> </ul>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자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대학의 전형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학·석사 통합 과정, 취업형 계약학과 포함)
- 대학은 각 모집시기별 모집인원과 전형 내용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필요 시 개별 대학과 협의·조정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함
  - 대학은 각 모집시기별 모집요강을 계획할 때에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과 수시·정시모집 주요 사항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 협의·조정을 거쳐서 발표하여야 함
-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제출할 때, 정원 내 전형의 선발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모집인원 「미지정」은 불가함
-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제출할 때, 정원 외 전형의 선발 인원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미지정」을 허용함
  - 단, 법령상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등으로 구분된 지원자격별 선발 인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고 시행하여야 함

## 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4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이후,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이 가능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가능 사유는 아래와 같음
    -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가 있는 경우
    -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으로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으로 인한 변경은 2018년 5월 말까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조정이 완료되어야 함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는 모집시기별 선발 인원 및 전형유형,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정시 모집의 해당 모집 '군',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수능 응시영역 또는 반영영역과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교과와 반영방법, 수능 가산점,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등을 반영하여 2017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고하여야 함

## 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미준수에 대한 제재

- 대학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 「대학윤리위원회」는 필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대교협 정관 제5장의 3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 제21조의 4 대학윤리위원회), 대교협 이사회에 징계 등의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대학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학생 정원 감축' 등 행정 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2 관련)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과 수시·정시모집 주요 사항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이를 준수하지 못한 대학은 '미제출 대학'으로 공지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향후 대학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별도의 협의 조정을 거친 후 발표하도록 함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준수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에 한함(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제외)

## 4.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 정보의 제공

### 가.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 정보의 제공

- 대교협은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주요 사항과 모집시기별 모집요강 주요 사항 등 대학입학정보를 취합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각 대학은 이와 관련한 대교협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대학은 대교협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해야 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전형유형별 지원 및 등록 현황, 모집단위(계열)별 지원 및 등록 현황, 대학별 고사 평가 기준 등 학생의 진학 준비에 유용한 정보들을 공개해야 함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제시된 정보 항목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험 준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전형 정보를 대학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권장함

## 5. 대학입학 표준 공통원서 사용 및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 가. 대학입학 표준 공통원서 사용

- 각 대학은 대교협에서 제공하는 표준 공통원서를 사용하여 지원을 받아야 함
  - 대교협은 대학의 의견을 모아 표준 공통원서를 마련함

### 나. 수험생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각 대학은 원서접수 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자체 점검 및 대교협의 점검을 위해 DB 작동기록, 보안장비 운영기록, 웹서버 운영기록 등 주요 로그를 일정기간 보관하고 관계기관 점검에 협조해야 함
  - 원서접수를 외부 기관에서 대행처리 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점검체계를 구축·운영 하도록 하고, 대학 자체 점검 및 대교협의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대학이 원서접수 처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안정성 인증(ISMS)',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을 획득한 기관에서 원서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함
- 대학은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유출 및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 Ⅱ. 전형별 기본사항

### 1. 일반전형의 기본사항

#### 가. 전형 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 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해야 함
-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 대상·지원자격 기준·전형 기준, 사정 모형 등의 전형방법을 결정함
- 교육 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종교·성별·재산·장애·연령·졸업년도 등)으로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 대학은 전형 원칙을 정할 때 고교 교육과정의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 나.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 모집단위의 설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 실제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단위와 학칙의 모집단위를 동일하게 설정함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원서 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대학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함
- 본교와 분교, 주간 모집단위와 야간 모집단위는 각각 분리하여 모집함

#### 다. 사정 모형

- 모집단위별 사정 원칙과 모형은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 전형요소의 반영 점수는 최저점과 최고점 등을 원서 접수 전에 안내하여야 함(단,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예외)

## 2. 특별전형의 기본사항

### 가. 전형 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함
-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전형 대상·지원자격 기준·전형 기준과 사정 모형 등의 전형방법을 결정해야 함
- 대학은 전형 원칙을 정할 때, 고교 교육과정의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 나. 특별전型的 종류

- 정원 내 특별전형 : 대학의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독자적 기준 및 차등적 보상 기준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자격을 정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함
- 정원 외 특별전형 :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함

### 다.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정원 내 특별전형 :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함
- 본교와 분교, 주간 모집단위와 야간 모집단위는 각각 분리하여 모집
-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 산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4% 이내
    -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5% 이내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2% 이내  
(단,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은 모집인원 제한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5% 이내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 아래 표의 범위 내
- 장애·지체로 인한 특수한 교육적 필요 대상자 특별전형 : 제한 없음
-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을 설정하되, 모집단위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관련 별표1 참고)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산업체위탁교육생 입학정원은 교육부 소관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미충원으로 발생한 결원은 차차년도로 이월하여 모집할 수 없음

[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

호수	대 상 자		총학생수 기준				
			연도별 입학정원 대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1	산업체 위탁학생, 기타 위탁학생		교육부장관이 결정		교육부장관이 결정		
2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6·7호 대상자 제외)		2%		10%	(의대 5%, 교대·원격대 20%)	
4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		입학정원 제한 없음		입학정원 제한 없음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입학정원 제한 없음		입학정원 제한 없음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입학정원 제한 없음		입학정원 제한 없음		
14	기회 균형 선발	농어촌지역 학생 및 도서·벽지의 학생	4%	5.5%	11%	10%	(의대 5%, 교대·원격대 20%)
		특성화고교 졸업자	1.5%			10%	(의대 5%, 교대·원격대 20%)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20%	(의대 5%, 교대·원격대 20%)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			-	(의대 5%, 교대·원격대 20%)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관련 [별표 1] 중, 신입학 해당 내용

※ 사범대학(사범계학과 포함,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편입·재입학과 정원 외 입학 및 전과 등을 합한 수는 학과별 승인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원양성기관 정원 외 운영 규정을 따름

### 3. 특별전형의 세부사항

#### 가. 특별전형 분류

구분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예시)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예시)
정원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고시 출신자</li> <li>· 대안학교 출신자</li> <li>· 다문화가정 자녀</li> <li>· 다자녀가정 자녀</li> <li>·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li> <li>·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별 독자적 기준</li> <li>- 종교 관련</li> <li>· :</li> <li>· 특기자(예체능, 어학 등)</li> <li>· 산업대학 우선선발</li> <li>· :</li> </ul>
	<p>고른기회 특별전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훈대상자</li> <li>· 만학도</li> <li>· 지역인재</li> <li>· 농어촌학생</li> <li>· 특성화고교 졸업자</li> <li>·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li> <li>·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li> <li>· 장애인 등 대상자</li> <li>· 서해 5도 학생</li> </ul>	
정원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학생</li> <li>· 특성화고교 졸업자</li> <li>·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li> <li>·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li> <li>· 장애인 등 대상자</li> <li>· 재외국민과 외국인</li> <li>· 서해 5도 학생</li> <li>· :</li> </ul>	

- ※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 전형 취지에 적합한 자격 기준 및 평가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함
- ※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 자격 기준, 전형 대상 및 방법을 대학 자율로 결정하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외국 소재 고교를 졸업한 자가 정원 내 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공문[대입제도과-653호(2015.3.1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외국 초·중·고 졸업 학력인정 관련 사항 안내 준수
-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과정 중에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으며,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출생 자녀 또는 국내 입국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

#### 나. 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내 특별전형은 차등적 보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과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분류함

(1)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하지 않고, 국가보훈대상자 전형으로 동일하여 모집함

○ 자격 심사

-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로 지원자격을 심사함

(2) 고른기회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다음의 지원자격을 ‘고른기회 특별전형’으로 설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보훈대상자</li> <li>- 농어촌학생</li> <li>-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li> <li>- 특성화고교 졸업자</li> <li>-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등 대상자</li> <li>- 서해 5도 학생</li> <li>- 만학도</li> <li>- 지역인재</li> </ul>
---	--

-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서해 5도 학생을 ‘고른기회 특별전형’ 지원자격으로 설정할 때에는 해당 법령상 제시된 지원자격 인정 범위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기술된 정원 내·외 지원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함
-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지원자격을 설정하여야 함
  - 지역 설정의 범위

권역	해당 지역
충청권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호남권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경북권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울산·경남권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권	강원도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 특정 지역 고교, 협정 체결 및 자매결연고교 만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음
- 고교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 졸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지원자격을 설정할 수 없음
- 재학기준은 입학부터 졸업까지임
-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에 대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할 수 없음

### (3) 특기자 특별전형

#### ○ 자격 기준

- 특기자 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자격 기준을 설정함

#### ○ 자격 심사

-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교과 및 교과 외 활동 등의 전형 자료에 기초하여 적격자를 공개 전형으로 선발함
- 선발 분야는 대학에서 모집단위와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 ❖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

#### ○ 일반 사항

- 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시행할 경우,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격 기준 및 전형방법을 설정함
  - ‘사전 스카우트’, ‘끼워 넣기’ 등의 불법·부정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음
- 대학은 지원자격 및 선발 방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모집요강에 전형요소별 세부 심사 기준을 공개하며, 기본 사항에 제시된 전형일정을 준수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특기자를 선발하여야 함
- 대학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시행함에 있어, 학생들의 균등한 기회를 저해하는 서류 (예: 학생 본인의 지원 의사, 학부모의 확인, 학교장의 추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대표자의 승낙 의사 등이 포함되어 사전 스카우트·끼워 넣기 등 부정입학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 서류를 지칭함)를 평가에 반영해서는 안되며,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금 등 특전을 사전에 명시하여 안내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대학 및 모집단위를 충분히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자격 기준

- 각 종목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 자격 기준을 권장함
- 고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재학 당시의 경기 실적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설정할 것을 권장함
- 종목별 세부적인 자격 심사 기준을 모집요강에 명시함
- 종목별, 포지션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하도록 권장함

○ 전형방법

- 전형요소(학생부, 수능성적, 경기실적, 실기고사 등)별로 명확하고 상세한 심사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특기자를 선발함
  - 초·중·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시행(최저학력기준 적용)에 따라 학생부 반영을 권장함
    - ※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교육 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초·중·고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제 도입
  -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경기실적 등 최대한 객관적인 요소를 위주로 평가하며, 면접 등 정성적 평가요소 및 비율은 최소화함(면접 등 정성적 평가 시 일정비율 이상의 외부 위원 참여를 필수화하고, 실기 운영 시 종목별 공동실기를 권장함)
- 경기 실적의 경우, 개인 종목뿐만 아니라 단체 종목 내 개인 경기실적의 반영비율을 확대하여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끼워 넣기’ 등 부정입학을 방지하도록 권장함
- 해당 종목 특성 및 선수 현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형방법을 설정함으로써 대학이 필요로 하는 우수선수를 선발하도록 권장함
- 부정입학 학생선수에 대한 입학 취소 근거 규정을 학칙에 반영해야함

(4) 산업대학 특별전형 우선선발

- 특별전형으로 입학자 선발 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그 순위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함

## 다. 정원 외 특별전형

- 전형 취지에 적합하게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전형 취지 부합도'를 전형요소 또는 평가지표에 반영함
-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 예고를 강화함
- 부정입학자 처리 규정 정비 : 정원 외 특별전형 관련 부정입학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모집요강 및 학칙에 명시해야 함

### (1)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 자격 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 수험생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소재지·재학 기간·학생 거주지·거주 기간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함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①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유형 I)과 ②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 및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유형 II)로 구분됨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제출서류 보완 및 의무화

- 지원자격 확인서, 농어촌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위의 서류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부(또는 모)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이 밖에도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검증 내실화

- 서류 검증을 내실화해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 재확인 및 추가 서류 검토 등을 통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학생의 중·고등학교 입학 전후로 학생 및 부모의 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 학생 및 부모의 거주지가 농어촌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부모의 직장 소재지가 도시 지역인 경우(출, 퇴근 가능 여부 등 점검)
- 학생의 형제나 자매가 학생과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등

■ 농어촌 지역 설정

-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 농가 인구 비율, 인구 규모, 도시화의 진행 수준, 대도시로의 접근성 등의 교육 여건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교육 여건이 미비한 지역의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유의함
    - 단, 대학의 판단에 따라 지원자격에 반영하지 않고, 선발 과정에서 ‘교육 환경’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읍·면’ 지역에서 ‘시’ 지역으로 개편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구역 개편 대상 지역의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 설정

(2)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특성화고등학교 등”이라 한다)의 졸업자(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교 및 특성화고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를 의미함

- 2015학년도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은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됨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특성화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함

※ 특성화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 계열이 아닌 모집단위에서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을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

■ 운영 기준

- 동일 계열 인정은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별 기준학과’ 정보를 참고하여, 대학의 장이 모집단위별 학문 특성과 고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동일 계열인 ‘기준학과’를 모집

요강에 명시(단, 동일 계열인 기준학과가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의 동일 계열 운영 방안 모형]**

┌──고교가 학과별 기준학과 설정──┐ ┌──대학이 기준학과별 지원가능 모집단위 설정──┐

특성화고	학과명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모집단위명	대학
A고	디지털정보처리과	경영정보과	경영학과	D대
B고	영상미디어과	영상제작과	미디어학과, 영상정보과	E대
C고	건축설비과	건축과	건축과, 토목과	F대

-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심의 시 동일 계열 확인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학점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공 적합성’을 심사 항목에 포함하여 심의함
  - 대학은 동일 계열 심의 시,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별 기준학과’ 정보를 참고하여 대학 모집단위에 적합한 기준학과를 지정해야 함. 특성화고등학교의 기준학과가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학과와 다르더라도 대학의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특성화고등학교는 1개 학과에 대하여 최대 2개의 기준 학과를 제시할 수 있음)

**(3)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3)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4)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운영 기준 및 방법

- 산업체 재직자를 위한 모집단위 신설이 원칙이나, 기존 학과에 별도·혼합반 편성 및 운영이 가능함. 다만, 산업체 근로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및 수업 방식 등을 재직자 맞춤형으로 개편하여 특별 프로그램(야간·주말과정, 사이버 과정 등)을 개발·운영할 것(보건·의료 및 교원 양성 관련 학과 제외)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

## (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특별전형

### ■ 자격 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자 제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편법·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를 지원자격 상에서 제한할 수 없음

(5)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 단, 수험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 기준을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야 하며, 특정 학과나 특정 장애 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특별전형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장애의 정도, 교육환경 등 고려) 등을 도입하여 중증 장애 학생 등이 선발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함
-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증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도 대상자로 정함

※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교 졸업 동등 학력자를 지원자격 상에서 제한할 수 없음

(6)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자격 기준

○ 법령상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p>가. 재외국민</p> <p>나. 외국인</p> <p>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p>
---

○ 법령상 지원자격 구분에 따른 세부 지원자격의 예

모집인원	법령 구분	세부 지원자격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해외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 급별 수학 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격 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함
  - 해외 학교 재학 기간, 자격 인정 기준 시점, 자격 기간 계산 기준, 지원자격 인정 유효 기간,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제3국 수학 인정 범위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 설정

재학기간을 설정할 때, 외국인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권장(예 : 중·고교 과정 연속 3~4년 이상,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교 과정 연속 6~8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교 과정 연속 9~12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부모·학생의 외국 거주 적법성 및 직업의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부모의 직업과 거주 기간 등을 자격 기준으로 부가 설정하고, 모집요강에 기재된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 강화
  - 대상자 간 형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격 기준을 설정함
- 부모의 해외 근무 기간 허위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통한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증 및 부모의 재직 기관에 해외 근무 기간을 확인하는 절차를 권장함
  - 대학 간 제출 서류의 위·변조 적발 사례 공유 등 상시 검증 체제를 구축하여 입학 후에도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원자격 편법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 상실·취득 내용이 기록된 기본증명서 및 입양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확인할 것을 권장함
- 지원자격 심사 관련 안내사항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 외국의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해당 대학에서 판단함
  - 자격 기준에 대한 판단은 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되, 안내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 권장
-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지원자격 심사 관련 안내사항
  -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권장함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입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권장함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을 권장함
  -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해외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 ■ 전형일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재학하고 있는 해외 주재 한국학교들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전형을 7~8월 중에 진행할 것을 권장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경우, 입학 시기 및 일정을 자율로 정하여 대교협 심의를 거친 후 운영하되, 「고등교육법」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른 전형방법의 사전예고는 준수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의 경우, 3월 입학자를 선발할 때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일정을 준수하여야 함. 9월 입학자를 선발할 때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사전 예고하되 대학 자율로 일정을 정하여 운영 가능함

### ■ 전형방법

- 전형방법은 대학이 합리적으로 자율 결정하여 시행함
- ‘업무처리요령’을 작성·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근무 및 재학 기간 등 자격 요건과 전형방법 변경 시, 경과조치 및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함

### ■ 모집인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의 모집인원은 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별표1] 정원 외 특별전형 총 학생수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야 하며, 이를 정원 제한 없이 선발하여서는 안 됨(감사원 지적 사례)

■ **지원자 제출 서류 공통화**

○ 대학마다 상이한 제출서류로 인한 수험생 및 부모 혼란 해소를 위해 공통화 권장

공통 제출서류(재외국민 2% 이내 기준)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등학교 재학 또는 성적증명서(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함) 3.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증명서 4. 중학교/고등학교 성적증명서 5. 학생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6.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8. 여권 사본(부모, 학생) 9.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모, 학생) 10.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 11.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 12.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 13.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

※ 대학별 추가 서류는 대학자율로 결정

※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공통 지원자격 안내**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2% 선발) 전형의 지원 자격을 표준화함

-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설정
- 다만, 지원자격 변경에 따른 학생·부모의 신뢰보호 및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20학년도까지는 대학 자율로 시행하되, 공통 지원자격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

구분	2020학년도 까지	2021학년도 이후
학생 이수 기간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 자율 시행	고교 1년 포함 중·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
체류 기간	대학 자율 설정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2021학년도부터 변경됨을 모집요강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

○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구분	내용
해외근무자의 정의	역년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외국체류일수 조건	해당 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특례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li> <li>2. 초등학교 재학 또는 성적증명서(해외 고교 졸업자에 한함)</li> <li>3.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증명서</li> <li>4. 중학교/고등학교 성적증명서</li> <li>5.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li> <li>6.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li> <li>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li> <li>8. 여권 사본(부모, 학생)</li> <li>9.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모, 학생)</li> <li>10.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li> <li>11.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세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li> <li>12.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li> </ol>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구분	내용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정의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li> <li>2. 초·중·고 재학증명서</li> <li>3. 초·중·고 성적증명서</li> <li>4. 출입국사실증명서</li> <li>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li> <li>6. 신분증 사본</li> </ol>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구분	내용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정의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li> <li>2. 초등학교 재학 또는 성적증명서</li> <li>3. 중학교 재학증명서</li> <li>4. 중학교 성적증명서</li> <li>5. 고등학교 재학증명서</li> <li>6. 고등학교 성적증명서</li> <li>7.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li> <li>8.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li> </ol>

(7) 산업체위탁교육생 선발

모집인원, 실시 기준 등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을 적용함

(8) 서해 5도 특별전형

2011년 1월 28일 제정 공포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함



## Ⅲ. 전형 요소

### 1. 학교생활기록부

#### 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자료

- 작성기준일
  - 수시모집 : 2018. 8. 31.(금)(교과, 비교과)
  - 정시모집 : 2018. 11. 30.(금)(교과, 비교과)
- 제공 방법
  - 제공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제공방법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공
  - 제공대상 : 2014년 2월 졸업자 ~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 제공시기 : (수시) 2018. 9. 17.(월)  
(정시 및 추가 모집) 2019. 1. 3.(목)

#### 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활용

- 전산 자료 이외의 학교생활기록부 활용은 전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학생부 위주 전형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지하며 추가적인 전형요소를 최소화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학생부 이외의 제출 서류는 학생부 기재 내용을 보완·확인하기 위한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과 같은 자료로 한정하고, 공인어학성적과 교과관련 외부수상 실적 제출은 엄격히 금지하도록 함
- 교과학습발달상황, 비교과 활동(창의적 체험활동, 예술 및 체육활동 등 포함)사항 등을 대학 및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평가함
-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의 대입전형자료도 온라인으로 제공함

## 2.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 : 2018. 11. 15.(목)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일 : 2018. 12. 5.(수)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전산자료 제공(예정)
  - 제공일시 : 2018. 12. 5.(수) ~ 2019학년도 대입전형 마감일
  - 제공방법 : 온라인 제공
  - 제공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제공자료
    - 수험생이 응시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표기
    - \*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선택과목 표시
    - 한국사 및 영어는 등급만을 기재하며,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 표기

[ 한국사 및 영어 영역의 등급 분할 원점수 ]

등급	과목	1	2	3	4	5	6	7	8	9
분할 기준 (원점수)	한국사	50~40	39~35	34~30	29~25	24~20	19~15	14~10	9~5	4~0
	영어	100~90	89~80	79~70	69~60	59~50	49~40	39~30	29~20	19~0

- 한국사 및 영어 이외 시험영역(과목)은 각각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
  - \* 표준점수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
  - \* 백분위는 정수로 된 표준점수에 근거하여 산출하되,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

[ 한국사 및 영어 이외 영역(과목)의 등급별 기준비율 ]

등급	1	2	3	4	5	6	7	8	9
기준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활용
  - 수시모집에서는 최저학력기준(등급)으로만 활용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성적통보 이후 부정행위자가 적발될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명단을 대학에 통보
  - 대학이 부정행위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대상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여 학칙에 따라 처리
  
-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필수 지정 취지 실현 권고
  -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인 “한국사”를 전형요소로 활용함에 있어, 최저학력 기준 설정, 가산점 반영, 응시여부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3. 대학별 고사

- 대학별 고사(논술고사 등)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논술보다는 학생부·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다수의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요소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함
  - 대학의 장은 논술고사 등 필답 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대학별 고사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과거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 형태의 지필 고사가 되지 않도록 함(대교협 제135차 이사회 의결 사항, 2008.2.4.)
  -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출제하여 학생 스스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논술고사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고교 교사를 논술고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권장함
-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는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는 가급적 배제하고 학생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함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장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안 되며,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함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함
  -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원서 접수 전에 시험일자와 시간을 고지하여 수험생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시모집에서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고교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별 고사 실시 일자를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로 할 것을 권장함



## IV.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 1. 대학별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기한 : 2017년 3월 31일(금)
  - 대학 입학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대학입학전형 지원시스템에 입력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입력함
-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 2017년 4월 28일(금)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2항]
-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협의·조정 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개별 대학 홈페이지 등에 2017년 4월말 까지 게재하여 공개할 것. 다만, 대학 구조개혁 등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교협의 심의를 받아 수정 게시할 수 있음
-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모집요강은 예고된 대입정책 개선 방향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일정을 준수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는 등의 안내 조치를 취해야 함

## 2. 2019학년도 주요 전형별 대학입학 전형일정

### 가. 수시모집 입학전형

#### ■ 수시모집 주요 사항 제출 기한

- 대학은 수시 모집요강을 2018년 5월 2일(수)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수시모집에 관한 주요 사항을 2018년 5월 2일(수)까지 대교협에 제출하여야 함

#### ■ 수시모집 일정

구 분	내 용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18. 9. 10.(월) ~ 14.(금) 중 3일 이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2018. 7. 5.(목) ~ 7. 11.(수)
전형기간	2018. 9. 10.(월) ~ 12. 12.(수)(94일) (다만,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7~8월 중 전형 권장)
합격자 발표	2018. 12. 14.(금) 까지
합격자 등록	2018. 12. 17.(월) ~ 19.(수)(3일)
수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018. 12. 26.(수) 21:00 까지
수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18. 12. 27.(목)

-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총원 기간 : 대학에서 지원자 예비 합격 순위에 따라 총원 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도록, 미등록 총원 기간을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 ■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 관련 자료 제출

- 대학의 원서접수기간 동안 지원자 관련 자료를 대교협 대입지원방법 위반자 사전처리 안내 방식에 따라 매일 제출하여야 함(수시모집 지원 횟수가 제한되는 모든 전형)
  - 개별 대학의 지원자 현황을 제출하지 않아 타 대학과 수험생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학에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적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수시모집 지원현황 제출

- 대학은 수시 원서접수 종료 후, 최종 지원자 현황을 2018년 9월 21일(금)까지 대교협 「대입지원 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함

## 나. 정시모집 입학전형

### ■ 정시모집 주요 사항 제출

- 대학은 정시 모집요강을 2018년 9월 3일(월)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정시모집에 관한 주요 사항을 2018년 9월 3일(월)까지 대교협에 제출하여야 함
  - 대입 지원 시 혼선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모집단위의 선발 인원을 분할(가나 · 가다 · 나다 · 가나다)하여 모집할 수 없음

### ■ 정시모집 일정

구 분		내 용
원서접수		2018. 12. 29.(토) ~ 2019. 1. 3.(목) 중 3일 이상
전형 기간	가군	2019. 1. 4.(금) ~ 11.(금)(8일)
	나군	2019. 1. 12.(토) ~ 19.(토)(8일)
	다군	2019. 1. 20.(일) ~ 27.(일)(8일)
합격자 발표		2019. 1. 29.(화) 까지
합격자 등록		2019. 1. 30.(수) ~ 2. 1.(금)(3일)
정시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마감		2019. 2. 14.(목) 21:00 까지
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마감		2019. 2. 15.(금)

-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 · 산업대학 제외)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한 3개의 모집기간 군 중에서 선택하여 전형 실시
-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 · 산업대학 제외)이 모집단위별로 모집기간 군을 달리하여 학생 모집 가능

### ■ 정시모집 지원현황 제출

- 대학은 정시 원서접수 종료 후, 최종 지원자 현황을 2019년 1월 9일(수)까지 대교협 「대입지원 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함

## 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제출 기한

- 대학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2018년 5월 2일(수)까지 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을 2018년 5월 2일(수)까지 대교협에 제출하여야 함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을 정시·추가모집에서 실시할 경우, 해당 전형의 주요 사항 제출 기한까지 제출함

###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일정

구 분	내 용
원서접수	2018. 7. 5.(목) ~ 11.(수) ※ 수시모집 원서접수기간 중 실시도 가능
전형기간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7~8월 중 전형 실시 권장
합격자 발표	2018. 12. 14.(금) 까지
합격자 등록	2018. 12. 17.(월) ~ 19.(수)(3일)
미등록 총원 합격 통보 마감	2018. 12. 26.(수) 21:00 까지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18. 12. 27.(목)

-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특별전형을 수시모집에 실시할 경우,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기간은 수시모집 일정과 동일하게 운영함
- 정시·추가모집에서 실시할 경우, 정시·추가모집의 전형일정을 준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모집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함(9월 입학 가능)</li> <li>●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6회)이 적용됨.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에 대한 기준은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함</li> <li>●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경우, 동일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 입학 학기에 대학에 합격한 자는 9월 학기 입학 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음</li> <li>●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에 따라 학교운영상 필요의 경우, 학칙으로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말일까지 학년도를 운영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일부 모집단위 및 일부 전형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함(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부모 모두 외국인 전형은 예외)</li> <li>- 9월부터 시작하는 학년도의 운영은 대학 전체의 모든 모집단위 및 전형, 이에 따른 행정상의 구분이 변경될 때는 실시 가능함</li> </ul> </li> </ul>
---

## 라. 추가모집 입학전형

### ■ 추가모집 주요 사항 제출기한

- 추가모집을 실시하려는 대학은 정시 미등록 충원이 마감된 2019년 2월 15일(금) 이후의 결원 사항과 추가모집에 관한 주요 사항을 2019년 2월 16일(토) 오후까지 제출해야 함
- 제출일 이후에 발생한 추가적인 변동 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인 2019년 2월 24일(일)까지 수시로 대교협에 제출해야 함

### ■ 추가모집 일정

구 분	내 용
원서접수 & 전형일 & 합격자 발표	2019. 2. 17.(일) ~ 24.(일) 21:00 까지
등록기간	2019. 2. 25.(월)

- 추가모집은 정시모집 이후의 결원 보충을 위하여 2019년 2월 17일(일) 오전 9시부터 실시하며, 원서접수와 병행하여 전형을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정시모집의 안정적인 등록을 위하여 추가모집에 대한 공지 및 선발인원의 발표는 2019년 2월 17일(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함

### ■ 추가모집 지원 현황 제출

- 추가모집 원서접수 종료 후, 최종 지원자 현황을 2019년 2월 28일(목) 오후 5시까지 대교협 「대입지원 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함

## 마. 전형별 등록현황 제출

### ■ 제출일정

- 수시 등록현황 제출 : 2019년 1월 3일(목)까지
- 정시·추가 등록현황 제출 : 2019년 3월 5일(화)까지

- 제출방법 : 대교협 「대입지원 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전송

## 바. 대학입학전형 지원 방법 위반자 처리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 지원 방법 위반자 처리 업무 수행
  - 수시모집 미등록 합격자를 발표한 후, 최종합격자 현황을 대교협 「대입지원 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을 이용하여 2018년 12월 27일(목) 오후 9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정시모집 미등록 합격자를 발표한 후, 최종등록자 현황을 대교협 「대입지원 위반자 사전예방시스템」을 이용하여 2019년 2월 15일(금) 오후 9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수시, 정시, 추가모집 지원, 합격, 등록자 현황 최종 점검 : 2019년 4월 중
  - 위반자 검색 완료 및 심의 : 2019년 4월 중
  - 대학에 최종 위반자 통보 : 2019년 4월 중
    - 위반 내용 : 복수지원 위반 및 이중등록 사항

### 3.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세부사항

#### 가. 모집시기 구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모집시기는 수시모집·정시모집·추가모집으로 구분하고, 모집 간의 분할 모집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함

#### 나. 대학지원 방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 대교협은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지원 방법을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은 무효로 함
  - 대학은 모집시기별 합격자, 등록자 명단 등 대입 지원위반자 검색을 위한 자료를 대교협 요청 기간에 맞춰 즉시 제공하여 대입 지원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대학은 등록자에 대한 고교 졸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원서접수는 온라인 방법을 권장하며, 접수된 원서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 수시모집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 가능한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함
  - ‘6회 제한’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됨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또한 수시모집 지원 횟수의 계수 대상에 포함(모집정원의 2%를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초·중등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 이탈주민, 본인만 외국인 등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속한 모든 전형이 수시모집 지원 횟수의 계수 대상임. 다만,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형은 제외)

-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지원 횟수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학생의 전형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을 부여할 수 없음
  - 전형이라 함은 정원 외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포함한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함
  - 지원 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 지원 횟수로 산정함
-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취소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입학이 무효가 됨을 모집요강에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전산에 입력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창구 접수의 경우에는 대학이 지원자의 원서를 접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함.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대학에 우편이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함
- 대학은 수시모집 지원 방법(6개 전형 이내 지원 가능), 복수지원 허용 범위와 위반자에 대한 입학 취소 등을 모집요강과 원서 등에 명시하여 지원자가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 창구 접수 시에는 대면으로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함
-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 하나의 전형에서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함
  - 대학은 하나의 전형 안에 여러 트랙(다수의 지망 등 하부 단위)으로 묶어서 전형을 운영할 수 없음
  - 학생은 하나의 전형에서 다수의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은 일부 수험생의 합격을 미리 발표하여 수험생 간 혼선을 유발하는 우선선발 및 우선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없음
  - 대학은 수시모집의 지원 횟수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공정한 입시 제도를 정착시키며, 고교 현장의 진학지도 혼란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전형을 설계하도록 권장함
- 수시모집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충원 실시 여부는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 ■ 정시모집

- 정시모집에서 군별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 모집기간 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음
  - 대학은 하나의 전형 안에 여러 트랙(다수의 지방 등 하부 단위)으로 묶어서 전형을 운영할 수 없음
  - 학생은 하나의 전형에서 다수의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은 일부 수험생의 합격을 미리 발표하여 수험생 간 혼선을 유발하는 우선선발 및 우선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다만, 전문대학·산업대학의 정시모집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대학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 다. 복수지원 관련 사항

### ■ 복수지원 허용 범위

-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함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 ■ 복수지원 금지사항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6개 전형에는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이 해당됨(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도 포함됨)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모집기간 군의 제한 없음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나, 다만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학, 전문대학 합격자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은 무효로 함

## 라. 합격자 발표

### ■ 합격자 발표 방법

- 대학은 지원자들이 합격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를 발표해야 함
- 합격자의 통보 방법(대학 홈페이지 게시, 전화 등)과 상관없이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실(최초 합격 및 충원 합격 포함)이 있는 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수시모집에 등록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 합격자 발표 시 유의사항

- 각 모집시기별로 모집요강에 기재된 기간과 인원수를 준수하여 합격자를 발표함
- 지원자 전원 또는 예비 합격 후보자의 순위 명단은 최초 합격자 발표 시 일괄 발표하거나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선택하되, 등록 시작 전일까지는 대상자에게 통보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을 권장함
  -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일괄 발표 또는 개인별 열람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충원 대상이 되는 예비 합격 후보자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예 : 전화녹취 등)를 확보해야 함
  - 개별 통보의 경우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예를 들어 3회 통화 시까지 연락이 안 되는 자 등)에 대한 처리방침을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하여야 함
- 합격자 발표(일정, 고지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에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 수험생은 합격자 발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일정, 고지 방법, 기타 유의 사항 등)을 숙지하고, 합격여부를 조회 및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모집요강에 안내하여야 함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 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등록 의사는 예치금 납부결과로 판단함 (즉,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등록의사가 없는 합격자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수시모집 예비 합격 순위를 부여받은 자들은 그 순위를 포기할 수 없음. 즉,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의 지원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 홈페이지 게시를 통하여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는 경우, 수험생이 합격여부를 조회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모집요강에 안내하여야 함
- 모집인원 유동제
  - 모집시기별로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전형기간 중의 등록금 환불자 포함)은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선발 가능함. 동일 모집시기에서의 전형 간 인원 이월은 불가능함

- 수시모집 내에서 전형 간 인원 이월은 불가능함
- 정시모집 내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간의 인원 이월은 불가능함
- 정시모집 내에서 군 별 인원 이월은 불가능함
- 정원 외 전형에서 법령으로 구분된 서로 다른 지원자격 간 인원 이월은 불가능함
- 대학은 동점자 처리 기준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하여 과도한 초과 선발을 지양해야 하며, 동점자 처리 세부 기준은 대학별 모집요강에 사전 고지함
  - 불가피하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당초 모집 예정 인원보다 초과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나, 초과 모집한 인원은 교육부 고시에 따라 감축함
-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모집인원 유동제로 특별전형 모집 비율(「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관련 별표1)을 초과할 수 없음

#### 마. 등록(「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신입생 등록은 미등록 인원의 충원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서 종료함

##### ■ 이중등록 금지

-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서도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으며(1개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 수시모집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을 모집요강에 명시하여야 함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 대교협은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해야 함
-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의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더불어, 대학 합격으로 등록한 수험생이 타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수시모집 등록

-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등록이란 문서 등록 또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 수시모집 합격자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과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총 납부금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등록 확인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음
-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의 수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정시모집 등록

-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 기간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 및 충원 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합격+충원 합격, 충원 합격+충원 합격 등)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하여야 함
-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미등록 충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대학에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예비 합격자에게는 충원 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게 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대학은 모집요강 등에 관련 사항을 명기하고, 대교협은 고등학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함

## 바. 미등록 충원

- 모집시기별로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전형기간 중의 등록금 환불자 포함)은 다음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선발 가능함

- 정원 외 특별전형의 미달 또는 미등록 결원은 사전에 예고하는 경우, 다음 모집시기에서 모집 가능(신입생 모집요강 등에 명확히 예고)
-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예비 합격자의 충원은 지원자 전원에 대해 발표한 순위 또는 합격자 사정 시 미리 확정하여 둔 예비 합격 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

## 사. 등록금 환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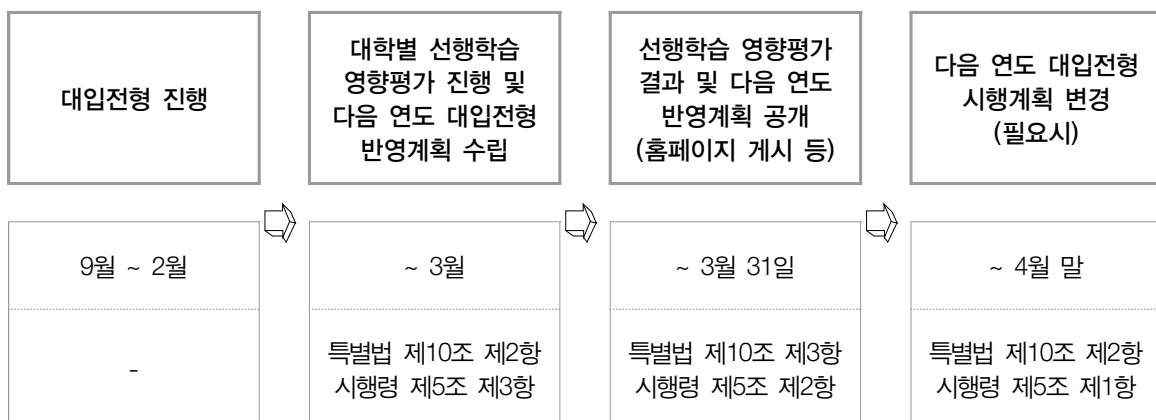
등록 포기(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등록 포기를 표시한 경우) 등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함

## 아. 전형료

- 전형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 실비만 책정하고 사회배려 대상자 등에게는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할 것을 권장함
  - 지난 학년도 지원을 및 전형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적정 전형료를 판단하되, 전형료를 적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전형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
  - 단계별 사정의 경우, 이전 단계 탈락자에게는 다음 단계의 전형료를 환불하는 등 전형료 환불 규정을 마련해야 함
  -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 방지를 위해 전형료 예·결산 내용을 공개해야 함

## 자. 선행학습 영향평가

- 관계법령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 ○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및 다음 연도 대입전형 반영계획 수립

-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운영한 경우 자체 계획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 영향평가 방법, 절차 등을 학교 규칙으로 규정하며,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 외부 위원(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현직 고교 교사, 학부모 등)이 균형있게 참여하여야 함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대학별 고사의 범위]**

- \* 논술고사 등 필답고사(적성고사 포함),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이 영향평가 대상이 됨
- \* 단,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호에 따라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에도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대학 자체 계획에 따라 영향평가를 진행하며, 3월 31일까지 결과를 발표해야 함을 고려하여 3월까지 영향평가를 완료해야 함
  - 영향평가 결과 이후 대입전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반영계획 수립
-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연도 대입 반영계획 수립

**차. 대학별 모집요강 공통 기재 사항**

## ○ 수시모집 지원·전형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대학별 모집요강에 공통적으로 명기함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취소 처리됨

- 이중등록 및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대학별 모집요강에 공통적으로 명기함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합격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는 입학 관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아울러 등록 포기 및 등록금 환불 절차를 모집요강에 명기하여 지원자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복수지원 관련 위반사항을 모집요강 및 입학원서 등에 반드시 명기하고, 입학원서 접수 과정에서 입학무효 조항을 확인하도록 함
- 입학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 및 모집요강 등에 따라 적정 조치함
  - 학칙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입학 무효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해야 함
-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등의 처리 조항과 ‘본교 및 타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을 모집요강이나 학칙에 명기하여 올바른 입시문화의 정착을 추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

- ①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②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등에 외부 스펙을 기술할 경우, 서류평가 시 불이익이 있음’을 사전에 모집요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 ③ 위 ①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④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위 ①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본교에 입학할 수 없음

○ 대학별 모집요강의 편제 알림

- 대학별로 발표하는 모집요강의 편제를 다음과 같이 공통화 할 것을 권장함

I.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변경 사항)	V-1. 제출서류 안내사항(양식포함) : 별첨 자료로 활용 (대학 선택)
II. 모집단위 · 전공(입학정원)	VI. 수시 : 학생부 반영방법 정시 : 수능 반영방법 학생부 반영방법
III. 전형별 모집인원	VII. 지원자 유의사항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유의사항 - 대학별 유의사항
IV.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충원합격발표 및 등록(미등록 충원 등) 등 안내	VIII.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V. 세부 전형별 안내 OOOOO 전형	IX. 전형료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X. 학사안내 (장학금, 기숙사, 학사, 취업)
2. 지원자격 ※ 수능최저학력기준	
3. 전형방법	
4. 선발원칙	
5. 전형일정	
6. 제출서류 ※ 동점자 처리기준	

○ 전형료 환불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 · 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함
- 입학 전형료의 반환 방법은 원서 접수 시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하여야 함
  -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해당 대학 직접 방문
-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1단계 탈락자에게는 해당 전형의 반환 전형료를 원서접수 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반환함
- 원서접수를 마감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음. 다만,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형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

## 별첨 1. 2018학년도 대비 201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 일정

구 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 학생부작성 기준일</li> <li>○ 정시 학생부작성 기준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8. 31.(목)</li> <li>○ 2017. 11. 30.(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8. 31.(금)</li> <li>○ 2018. 11. 30.(금)</li> </ul>
수시모집	○ 원서접수기간	○ 2017. 9. 11.(월) ~ 15.(금) 중 3일 이상	○ 2018. 9. 10.(월) ~ 14.(금) 중 3일 이상
	○ 전형기간	○ 2017. 9. 11.(월) ~ 12. 13.(수)(94일)	○ 2018. 9. 10.(월) ~ 12. 12.(수)(94일)
	○ 합격자 발표	○ 2017. 12. 15.(금)까지	○ 2018. 12. 14.(금)까지
	○ 등록기간	○ 2017. 12. 18.(월) ~ 21.(목)(4일)	○ 2018. 12. 17.(월) ~ 19.(수)(3일)
	○ 미등록 총원 합격통보마감	○ 2017. 12. 27.(수) (합격자 발표 21시 까지)	○ 2018. 12. 26.(수) (합격자 발표 21시 까지)
	○ 미등록 총원 등록마감	○ 2017. 12. 28.(목)	○ 2018. 12. 27.(목)
정시모집	○ 원서접수기간	○ 2017. 12. 30.(토) ~ 2018. 1. 2.(화) 중 3일 이상	○ 2018. 12. 29.(토) ~ 2019. 1. 3.(목) 중 3일 이상
	○ 전형기간	○ 가군 : 2018. 1. 3.(수) ~ 11.(목)(9일) ○ 나군 : 2018. 1. 12.(금) ~ 20.(토)(9일) ○ 다군 : 2018. 1. 21.(일) ~ 29.(월)(9일)	○ 가군 : 2019. 1. 4.(금) ~ 11.(금)(8일) ○ 나군 : 2019. 1. 12.(토) ~ 19.(토)(8일) ○ 다군 : 2019. 1. 20.(일) ~ 27.(일)(8일)
	○ 합격자 발표	○ 2018. 1. 30.(화)까지	○ 2019. 1. 29.(화)까지
	○ 등록기간	○ 2018. 1. 31.(수) ~ 2. 2.(금)(3일)	○ 2019. 1. 30.(수) ~ 2. 1.(금)(3일)
	○ 미등록 총원 합격통보마감	○ 2018. 2. 13.(화) (합격자 발표 21시 까지)	○ 2019. 2. 14.(목) (합격자 발표 21시 까지)
	○ 미등록 총원 등록마감	○ 2018. 2. 14.(수)	○ 2019. 2. 15.(금)
추가모집	○ 접수·전형·합격통보마감	○ 원서 접수/전형/합격자 발표 2018. 2. 18.(일) ~ 25.(일) 21시 까지	○ 원서 접수/전형/합격자 발표 2019. 2. 17.(일) ~ 24.(일) 21시 까지
	○ 등록기간	○ 2018. 2. 26.(월)	○ 2019. 2. 25.(월)

## 별첨 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현황[본분교 기준]

(2016. 8월 기준)

	대 학 명	구분		대 학 명	구분		대 학 명	구분		대 학 명	구분		대 학 명	구분			
1	강릉원주대	국립	36	강남대	사립	71	대신대	사립	106	서원대	사립	141	유원대	사립	176	한림대	사립
2	강원대	국립	37	건국대(서울)	사립	72	대전가톨릭대	사립	107	신문대	사립	142	을지대	사립	177	한서대	사립
3	경남과학기술대	국립	38	건국대(글로벌)	사립	73	대전대	사립	108	성결대	사립	143	이화여대	사립	178	한성대	사립
4	경북대	국립	39	건양대	사립	74	대전신학대	사립	109	성공회대	사립	144	인제대	사립	179	한세대	사립
5	경상대	국립	40	경기대	사립	75	대진대	사립	110	성균관대	사립	145	인천가톨릭대	사립	180	한신대	사립
6	공주대	국립	41	경남대	사립	76	덕성여대	사립	111	성신여대	사립	146	인하대	사립	181	한양대(서울)	사립
7	군산대	국립	42	경동대	사립	77	동국대(서울)	사립	112	세명대	사립	147	장로회신학대	사립	182	한양대(에리카)	사립
8	금오공과대	국립	43	경성대	사립	78	동국대(경주)	사립	113	세종대	사립	148	전주대	사립	183	한영신학대	사립
9	목포대	국립	44	경운대	사립	79	동덕여대	사립	114	세한대	사립	149	제주국제대	사립	184	한일장신대	사립
10	목포해양대	국립	45	경일대	사립	80	동명대	사립	115	승원대	사립	150	조선대	사립	185	한중대	사립
11	부경대	국립	46	경주대	사립	81	동서대	사립	116	수원가톨릭대	사립	151	중부대	사립	186	협성대	사립
12	부산대	국립	47	경희대	사립	82	동신대	사립	117	수원대	사립	152	중앙대	사립	187	호남대	사립
13	서울과학기술대	국립	48	계명대	사립	83	동아대	사립	118	숙명여대	사립	153	중앙승가대	사립	188	호남신학대	사립
14	서울대	국립	49	고려대(서울)	사립	84	동양대	사립	119	순천향대	사립	154	중원대	사립	189	호서대	사립
15	서울시립대	국립	50	고려대(세종)	사립	85	동의대	사립	120	송실대	사립	155	차의과학대	사립	190	홍익대(서울)	사립
16	순천대	국립	51	고신대	사립	86	루터대	사립	121	신경대	사립	156	창신대	사립	191	홍익대(세종)	사립
17	안동대	국립	52	광신대	사립	87	명지대	사립	122	신라대	사립	157	청주대	사립	산업대		
18	인천대	국립	53	광운대	사립	88	목원대	사립	123	신한대	사립	158	초당대	사립	192	청운대	사립 산업대
19	전남대	국립	54	광주가톨릭대	사립	89	목포가톨릭대	사립	124	아세아연합신대	사립	159	총신대	사립	193	호원대	사립 산업대
20	전북대	국립	55	광주대	사립	90	배재대	사립	125	이주대	사립	160	추계예술대	사립	교육대		
21	제주대	국립	56	광주여대	사립	91	백석대	사립	126	안양대	사립	161	침례신학대	사립	194	경인교대	교육대
22	창원대	국립	57	국민대	사립	92	부산가톨릭대	사립	127	연세대(서울)	사립	162	칼빈대	사립	195	공주교대	교육대
23	충남대	국립	58	극동대	사립	93	부산외대	사립	128	연세대(원주)	사립	163	케이씨대	사립	196	광주교대	교육대
24	충북대	국립	59	금강대	사립	94	부산장신대	사립	129	영남대	사립	164	평택대	사립	197	대구교대	교육대
25	한경대	국립	60	김천대	사립	95	삼육대	사립	130	영남신학대	사립	165	포항공대	사립	198	부산교대	교육대
26	한국교원대	국립	61	꽃동네대	사립	96	상명대(서울)	사립	131	영산대	사립	166	한국국제대	사립	199	서울교대	교육대
27	한국교통대	국립	62	나사렛대	사립	97	상명대(천안)	사립	132	영산신학대	사립	167	한국기술교대	사립	200	전주교대	교육대
28	한국체육대	국립	63	남부대	사립	98	삼지대	사립	133	예수대	사립	168	한국산업기술대	사립	201	진주교대	교육대
29	한국해양대	국립	64	남서울대	사립	99	서강대	사립	134	예원예술대	사립	169	한국성서대	사립	202	청주교대	교육대
30	한밭대	국립	65	단국대	사립	100	서경대	사립	135	용인대	사립	170	한국외대	사립	203	춘천교대	교육대
31	가야대	사립	66	대구가톨릭대	사립	101	서남대	사립	136	우석대	사립	171	한국항공대	사립			
32	가천대	사립	67	대구대	사립	102	서울기독대	사립	137	우송대	사립	172	한남대	사립			
33	가톨릭관동대	사립	68	대구예술대	사립	103	서울신학대	사립	138	울산대	사립	173	한동대	사립			
34	가톨릭대	사립	69	대구외국어대	사립	104	서울여대	사립	139	원광대	사립	174	한라대	사립			
35	감리교신학대	사립	70	대구한외대	사립	105	서울장신대	사립	140	위덕대	사립	175	한려대	사립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울산과학기술원 : 대교협 회원대학이나 고등교육법 설치 대학이 아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별도로 선발전형 실시